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21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2
2. 부칙	11
※ 참고자료	13
1.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	13
2. 2025년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지표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섭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7. 17.
3. 회 부 일 : 2025.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Ⅲ. 검토의견

1.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마사회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외발매소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 ----- ----- ----- ----- -----,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마사회는 26개¹⁾ 장외발매소²⁾에서 약 3조 9,000억원의 매출을 얻고 있으며, 이는 경마 전체 매출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임.

[연도별 경마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장	3,171	2,716	20,153	20,610	18,471
온라인	-	-	-	144	7,313
장외	7,719	7,760	43,816	44,253	39,355
총매출액	10,890	10,476	63,969	65,007	65,139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통계

1) <참고 1>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

2) 장외발매소: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이와 같이 장외발매소는 마사회의 마권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방세와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조성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장외발매소 주변의 교통체증 유발이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저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negative externality)³⁾ 효과가 있는 것도 현실임.

이에 장외발매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동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부작용 예방이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마사회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서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6개소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⁴⁾

3)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 발생함.

4)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행 경과]

☐ (방향정립) ‘지역영향평가 및 개선명령제 도입계획’ 수립(’19.3월)

* ‘19~’21년 시범평가, 평가기준·지표 정립 후 ‘22년 본 평가 시행

☐ (법 제정) 한국마사회법(’20.5.26) 및 시행규칙(’20.12.10) 개정·공포

☐ (시범평가) ’19년~’21년 시범평가 실시

구 분	2019	2020	2021
평가대상	분당, 안산	강동, 부산동구	창원, 부산동구

☐ (본 평가) ’22년 이후 매년 본 평가 실시

구 분	2022	2023	2024	2025(예정)
평가대상	도봉, 동대문, 선릉, 영등포, 대구, 천안	강북, 구리, 시흥, 일산, 인천연수, 광주	광명, 수원, 종로, 청담, 인천부평, 창원	중랑, 분당, 안산, 의정부, 인천미추홀, 부산동구

※ 자료: 한국마사회

그런데 장외발매소로부터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의 체감과는 달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개선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시행주체로 하여 실시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⁵⁾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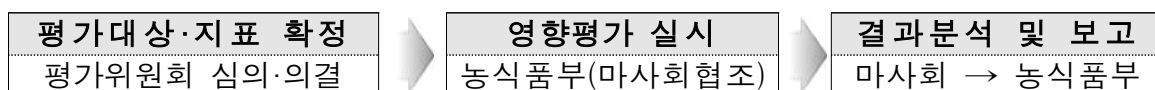
5) 디지털타임즈, “33년간 지역주민 고통” 김재섭 ‘장외발매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발의’, 2025-07-17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현행 제도에서는 장외발매소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체인 마사회가 영향평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평가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마사회 내부 인사가 맡고 있으며, 조사대상에 마사회 문화센터 회원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행 방법]

□ 시행체계



□ 평가대상 : 연간 6개소

-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정기평가는 장외발매소별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 대상선정 :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 위원회 구성(총 7명) : 외부 전문가(사감위 위원 등) 3명, 농식품부 축정과 마사회 담당 사무관 1명, 내부위원 3명(지사지원처장(위원장), 건전화사업부장, 계약부장)

□ 조사방법 : 외부 조사 전문기관 선정, 사전 설계 설문지 활용 개별 면접조사, 현장 조사원 관찰조사 및 환경분석 등 2차 자료조사 시행

- **조사대상** : 지역주민, 학생, 인근 사업주 및 문화센터 회원 등 500명
 * '24년 : 지역주민 300명(60%), 학생 70명(14%), 사업주 50명(10%), 회원 80명(16%)
 □ **조사항목** : 주거권, 학습권, 공익권 등 4개분야 22개 지표 조사⁶⁾ 실시

※ 자료: 한국마사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경마와 같은 사행산업인 경륜·경정이나 카지노의 경우 경마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설치 전 영향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동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후 정기적 영향평거나 지방자치단체 협의 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한국마사회의 의견이 있음.

[사행산업 분야별 영향평가 제도 현황]

구분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설치전 영향평가	○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에 관한 규정)	X/(단, 제주는 ○) (제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영향평가 관련 지자체(주민) 협의	○ 지자체 동의, 주민공청회 (장외발매소 개설·변경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지자체 동의서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에 관한 규정)	○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 등 민간전문가 포함 (제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사후 정기적 영향평가	○ (한국마사회법)	X	X
주민 반대에 따른 승인 취소	X	X	X

※ 자료: 한국마사회

6) <참고 2> 2025년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지표

그러나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과 이용자의 비중을 고려하면,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경마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사행산업 영업장별 매출액]

(단위: 억원)

구분	본장	온라인	장외	총매출액
경마	18,471	7,313	39,355	65,139
경륜	4,395	5,896	5,373	15,664
경정	634	2,863	2,760	6,258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통계

[2024년 사행산업 영업장별 이용객]

(단위: 천명)

구분	본장	장외	합 계
경마	3,646	5,898	9,544
경륜	808	1,599	2,407
경정	190	952	1,142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통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동 법 제56조⁷⁾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사설경마에 비해 사설경륜·경정이나 무허가 카지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미미하여 위험성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경마에 한정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7)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몰수·추징) 제50조·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제2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둘째, 장외발매소는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본장과 달리 화상을 통해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경기에 모두 베팅할 수 있는 특성상 유혹이나 오락보다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⁹⁾ 인근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절차는 제도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사전적인 평가기준의 설정에 관한 것이 될 경우 지역 간 평가 기준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운영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협의의 내용이 잠재적·실질적 피해자인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이 경우 법문의 명확성을 위해 ‘협의’를 ‘의견청취’로 수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셋째, 현행법상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¹⁰⁾ 개정안은 개선명령 불이행

8) 특히 사설경마는 그 규모가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설경륜·경정이나 무허가 카지노는 그 규모가 미미하여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위험성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설경륜·경정이나 무허가 카지노와는 달리 유사경마에 대하여서만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둔 합리적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전원재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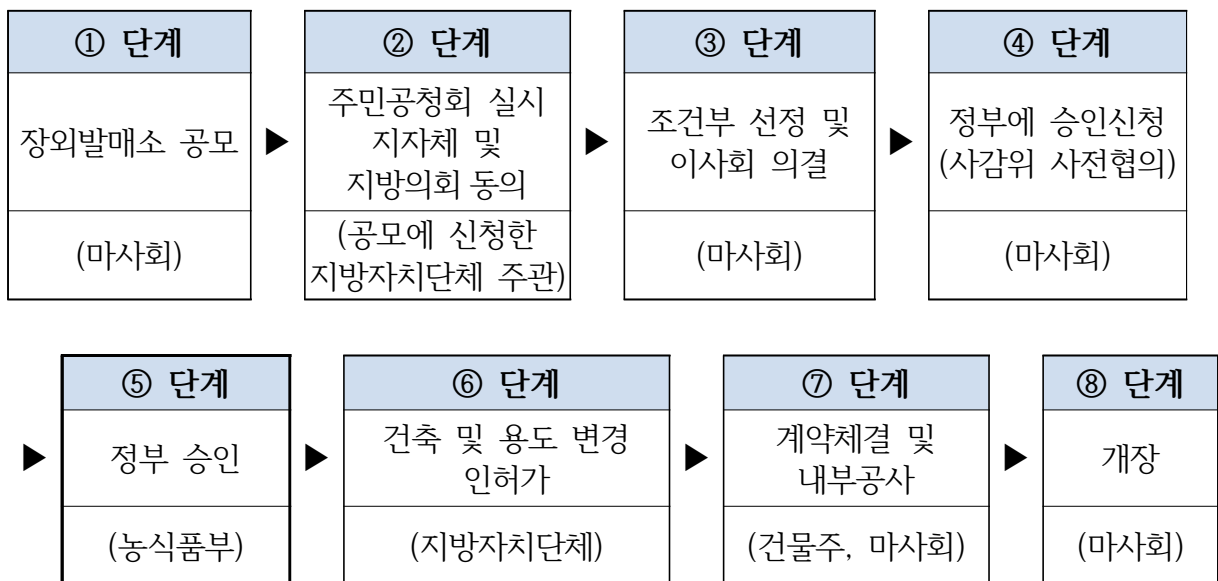
9) 박완주의원실,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1.2.15.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

시 승인 취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마사회의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¹⁾ 반복적·고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으로 제재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장외발매소로 인한 주거·교육환경상 피해를 고려할 때 개선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장외발매소의 승인 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현행 장외발매소 개장·이전 절차]



※ 자료: 한국마사회

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한국마사회법」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부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의무 등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제44조의3에 따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안 제44조의3제5항에서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부칙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의무 신설을 고려하여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를 6개월 내에 재실시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재도 5년 주기로 전 지점을 평가하고 있어 2025년말 기준으로는 전체 25개소¹²⁾ 중 24개소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단기간 내 일제히 평가를 재실시하는 것은 지역 상권이나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실질적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6개소 평가에 약 9,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전체 25개소에 대한 평가를 6개월 내에 실시할 경우 약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

12) '25.12.1. 1개소(선릉) 운영 종료에 따라 총 25개소로 축소 예정

참고1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

구 분	개장 시기/ 최초 개월	소재지	규모 (㎡)	운영 형태	수용 인원 (명)	2024		
						총매출액 (억 원)	입장객수 (명)	발매건수 (천 건)
강동지사	2006.12.	서울 강동구	14,046	임차	3,398	1,968	368,456	21,143
강북지사	2002.02.	서울 강북구	16,568	소유	2,879	1,385	282,969	17,001
광명지사	1993.09.	경기 광명시	7,286	소유	2,033	1,599	206,395	13,656
광주지사	2000.04.	광주광역시	28,862	소유	4,403	2,782	343,938	17,966
구리지사	1993.03.	경기 구리시	4,857	임차	1,466	1,017	148,630	8,429
대구지사	2002.08.	대구광역시	11,785	소유	2,527	1,316	201,201	12,359
도봉지사	1992.09.	서울 도봉구	9,147	소유	2,231	1,246	237,419	13,656
동대문지사	2005.09.	서울 동대문구	10,716	임차	2,760	1,772	308,822	16,997
부산동구지사	2002.02.	부산광역시	8,028	임차	1,916	1,481	227,291	16,373
분당지사	2002.06.	경기 성남시	25,804	소유	3,502	2,475	346,484	21,113
선릉지사	1993.09.	서울 강남구	4,989	임차	1,348	594	66,266	4,662
수원지사	2001.08.	경기 수원시	8,131	소유	1,787	1,694	195,929	12,455
시흥지사	2002.07.	경기 시흥시	6,780	임차	1,984	1,486	188,466	10,809
안산지사	1995.01.	경기 안산시	9,423	소유	2,314	1,573	215,791	12,153
영등포지사	1996.03.	서울 영등포구	30,884	소유	6,378	3,745	700,659	40,577
의정부지사	2005.02.	경기 의정부시	14,860	소유	2,804	1,559	230,525	13,544
인천추출지사	2006.12.	인천광역시	3,814	소유	932	626	99,314	6,317
인천부평지사	1993.07.	인천광역시	3,059	소유	610	617	95,061	5,867
인천연수지사	2004.06.	인천광역시	6,463	소유	1,788	1,043	149,220	8,923
인천중구지사	1995.06.	인천광역시	4,821	임차	1,310	569	105,386	5,667
일산지사	2007.11.	경기 고양시	12,550	임차	3,185	2,340	312,621	18,188
종로지사	1994.03.	서울 종로구	3,525	소유	954	634	117,588	6,442
중랑지사	2000.09.	서울 중랑구	7,564	임차	1,665	1,236	204,672	11,484
창원지사	2005.04.	경남 창원시	4,967	임차	980	514	73,946	5,521
천안지사	2005.03.	충남 천안시	13,081	소유	3,234	3,090	358,307	21,509
청담지사	2001.09.	서울 강남구	6,583	임차	1,370	995	112,930	7,416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통계

참고2

2025년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지표

구 분	지 표 명	세 부 정 의
주거권 (7)	① 설치기준 준수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지점설치 가능지역 외 위치 여부
	② 소음피해 주민 비율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원활한 주거 생활이 곤란한 주민 비율
	③ 쾌적성 저해 주민 비율	장외발매소 내·외부에서 배출한 쓰레기·폐기물 방치로 인한 쾌적성 저해를 경험한 주민 비율
	④ 출퇴근 지연 주민 비율	장외발매소 이용객으로 인해 출·퇴근 지연 피해를 겪은 주민 비율
	⑤ 장외발매소 직원 및 이용객과 마찰 경험 주민 비율	장외발매소 직원 또는 이용객과의 언쟁·폭행 등으로 인해 마찰을 경험한 주민 비율
	⑥ 주거 환경 저해 시설	주거지 인근의 소음, 쾌적성 저해, 출퇴근 지연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시설
	⑦ 장외 발매소 인지도	주민이 장외발매소의 존재·위치·기능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
학습권 (7)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여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내 위치 여부
	② 등·하교 환경 내 장외발매소 목격률	학교 근처 또는 등·하교 길에서 장외발매소를 목격한 학생 비율
	③ 소음피해 학생 비율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원활한 학업활동이 곤란한 학생 비율
	④ 장외발매소 이용객으로 인한 등·하교 지연 학생 비율	장외발매소 이용객으로 인해 등·하교 지연을 경험한 학생 비율
	⑤ 장외발매소 이용객과의 마찰 경험 학생 비율	장외발매소 직원 또는 이용객과의 언쟁·폭언 등으로 인해 마찰을 경험한 학생 비율
	⑥ 쾌적성 저해 경험 학생 비율	장외발매소 내·외부에서 배출한 쓰레기·폐기물 방치로 인한 쾌적성 저해를 경험한 학생 비율
	⑦ 학업유해시설 장외발매소 언급 비율	학업에 유해한 피해를 준 시설로 장외발매소 언급한 학생 비율
공익권 (7)	① 장외발매소 인근 사업장 매출 기여도	사업장 매출 영향력에 대한 긍정률 및 매출현황
	② 장외발매소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장외발매소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에 대한 사업주 인식
	③ 장외발매소 존치 의향	해당 지역 상인들의 장외발매소 지속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
	④ 문화강좌 이용자 만족도	문화강좌의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
	⑤ 문화센터 시설 이용 환경 만족도	문화센터 위치, 시설, 주변 환경 및 교통에 대한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
	⑥ 문화센터 지역사회 기여 활동 부합도	문화센터가 지역사회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정도
	⑦ 지방재원 기여 현황	장외발매소 해당 지자체내 레저세·지방재정지원금 등 납부실적 등 해당 재원의 지역사회 기여도
기 타 (1)	①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 시설로 인해 주변의 교통 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계수로 나타낸 것